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4. 30. 장종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5. 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2.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장종태의원)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해당 직원의 연금수급권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퇴직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현행법에서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은 직원등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 등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사망 시 부양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임을 고려하면,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의 연금 수급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여짐.

따라서 직원등의 유족의 양육책임 이행 수준을 고려하여 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

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현재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부모가 유족급여를 수급받는 경우는 드물어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기존 법령에 따른 급여 제한은 그 금액 기준 등이 법령에 모두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사기구가 필요치 않았으나, 신설되는 제한 사유는 양육책임의 이행 여부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어 사례별로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충실한 심사를 통한 심사결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양육책임 이행 수준을 심의·판단할 주체와 그 구성, 심의방식 등에 대한 선행 검토와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장종태의원, 주호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